

총회 목회자 수급과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 기조 발제 -

안인섭 교수

총신대 신대원
아시아교회정책연구소 운영위원장

I. 들어가는 글

보편성(Universality)과 특수성(Particularity)

성경과 개혁신학

한국교회보다 먼저 이 사안을 경험해 왔던 개혁교회의 역사

치명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감소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코로나19 이후 점증하는 현대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한국 사회의 비정상적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극단적 양극화 상황

II. 연구의 진행과 구조

2023년 11월 9일에 총회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위원장과의 회동

12월 1일에 목회자 수급 연구를 위해 총신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팀이 구성

안인섭 - 총회 목회자 수급과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이종민 교수 - 인구통계학적 조사와 질적 양적 조사

주종훈 교수 - 총신대 신대원 학생 대상 연구

강대훈 교수 -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본 목회자

김효남 교수 - 신학적 측면에서 본 목회자

III. 칼빈의 제네바와 화란개혁교회

1. 칼빈의 제네바 교회법령(1561)과 목사직

“주님이 그의 교회 통치를 위해 제정하신 네 종류의 직분”
: 목사, 박사(교사), 장로, 집사의 4종직

목사의 자격 검증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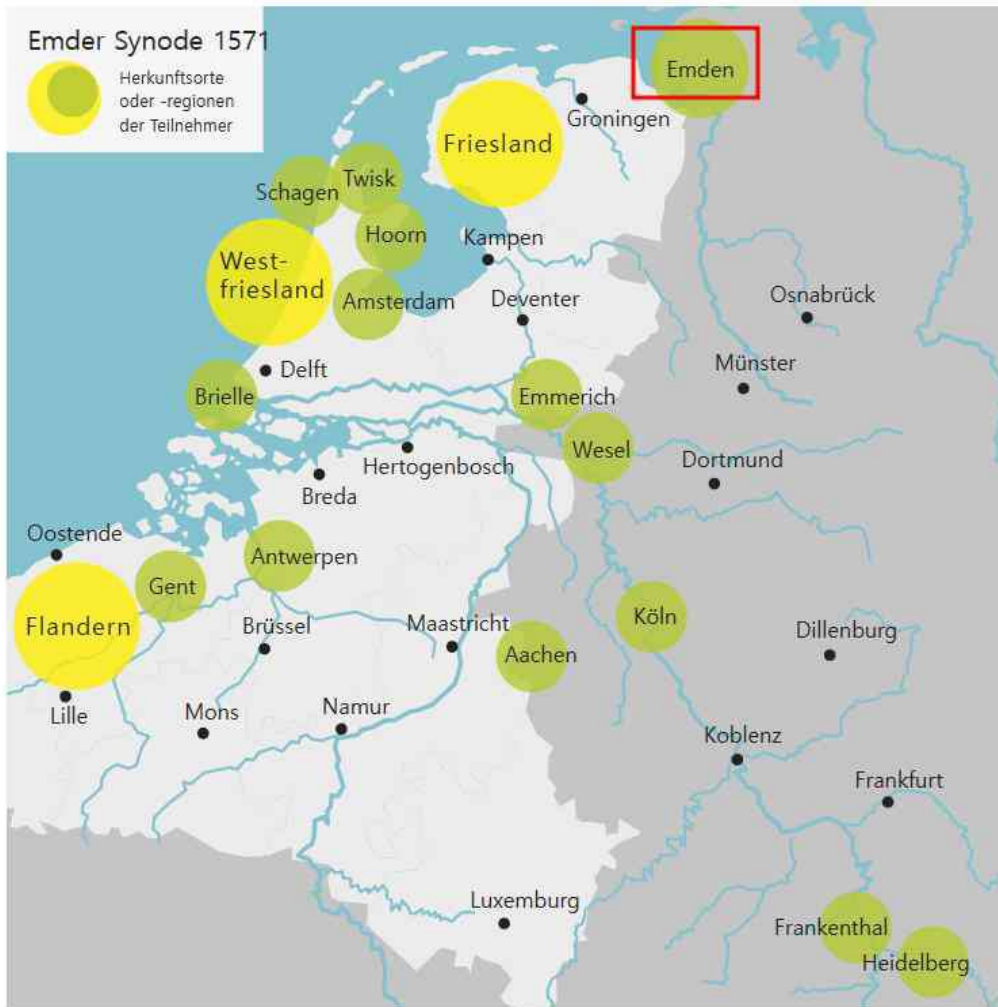
(1) 성경에 대한 바르고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리, 특히 교리문답서를 지키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

(2) 둘째는 목회자는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책망할 것 없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야 한다.

목사들은 교리의 순전함과 일치, 보전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성경연구회”를 실시해야. 만약 게으르면 경고.

“교리상 상이점이 있을 경우 목회자들은 그 문제를 함께 다루고 논의”

2. 최초의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총회 (엠던 총회, 1571)



장로교회의 조직 :

개 교회의 자율 존중 & 상위 권위를 존중

3. 도르트총회 (1618-19)

목회자 부족 현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적절한 목회자 수급을 위해 교회와 학교,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목회자 후보자 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5-6년으로 제안.
동시에 목회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질도 강조.

네덜란드 주 정부는
목회자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합한 후보자를 미리 선별하도록 하며,
그들의 신학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고
네덜란드 의회는 이를 총괄 감독해야 한다고 요청.

IV. 개혁주의 교회개혁운동:

1816년 : 프랑스 혁명(1789) 이후 계몽주의 영향으로 국가는 다시 교회와 신학을 통제하려고 함.

압스케이딩(분리, 1834) : 종교개혁과 도르트신조로 돌아가자는 개혁 운동.

기독교개혁교회의 형성 (CGK, 1869)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 교회개혁 (Doleantie, 돌레앙찌: 1886)

현대 화란개혁교회의 분화와 연합 :

위의 두 그룹이 연합하여 화란개혁교회(GKN, 1892)

- 목회자 배출 신학교 : 캄펜 신학대학교 & 자유대

연합에 반대하는 그룹은 아펠도른 신학교에서 목회자 배출.

화란개혁교회 프레이허마크트(Vrijgemaakt) (1944)

화란개신교회(PKN, 2004) - 목회자 배출 신학교 : PThU

화란개혁교회 (NGK, 2023) - 목회자 배출 신학교 : TU - Kampen/Utrecht

< 현대 화란개혁교회의 목회자 수급 >

교단 이름	목사 배출 방법	목사 수급 현황	목사 은퇴 연령	목사 은퇴 후 생활	목사 임용시 대도시-지방간 차이	목사후보생 모집위한 교단의 계획
<p>화란 개혁 교회 (PKN)</p>	<p>(1) 교단의 신학교(PThU)에서 목회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신학교는 교단에서 유일하게 인정된 목회자 훈련 기관이다.</p> <p>(2) 종종 타 교단 목회자들이 PKN에 오기도 하지만 이 경우 단기 추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p>	<p>점차 부족 상황.</p> <p>2020, 2021, 2022은 은퇴 목회자 유출이 신임 목회자 유입보다 4~5배가 더 많았다.</p> <p>흐로닝언-드렌터 노회의 경우 2028에는 현재 195개 교회 중 2/3가 공석이 될 것 예상.</p> <p>목회자를 파송하는 규모는 거의 공석이 생길 때마다 줄어 들고 있는 추세.</p> <p>목회자 모집을 위해서 각 교회 간 협력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 결과적으로 목회직이 파편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1) 목회자의 은퇴 연령은 국가적인 퇴직 연령과 관련이 있다.</p> <p>(2) 현재 67세.</p> <p>(3) 그러나 목회자는 5년간 은퇴를 연기하고 72세까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p>	<p>(1) 모든 네덜란드인은 국가(AOW)로부터 소액의 연금을 받는다.</p> <p>(2) 또한 목회자들은 연금기금에 가입하여 매달 기부금을 납부한다.</p> <p>(3) 그러나 은퇴 후에는 목회자가 스스로 집을 사거나 임대해야 한다.</p>	<p>(1)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네덜란드의 중부와 서부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다.</p> <p>(2) 네덜란드의 북부, 동부, 남부에서는 회중이 목사를 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p>	<p>(1) 이 교단은 신학을 공부할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p> <p>(2) 이런 맥락에서 소명의 주일 (vocations Sunday)을 실시할 계획.</p>

현대 화란개혁교회의 목회자 수급

교단 이름	목사 배출 방법	목사 수급 현황	목사 은퇴 연령	목사 은퇴 후 생활	목사 임용시 대도시-지방간 차이	목사후보생 모집위한 교단의 계획
화란 개혁 교회 (NGK)	(1) 화란의 개혁 교회의 교단에는 각각 고유한 신학대학이 있다. NGK에는 우트레흐트 신학대학이 있다. 참고로 PKN에는 개신교 신학대학, 그리고 CGK에는 아펠도른 신학대학이 있다. (2) 교단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후보자는 해당 신학대학에서 석사 수준을 졸업해야 한다.	(1) 목회자 부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4년에는 목회자가 부족이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의 세속화 과정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은퇴하는 목회자들이 많을 것이고, 어느 정도 교체(재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3) 다른 교회로 이동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은 이동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네덜란드 법의 은퇴 연령에 따른다. (2) 현재 은퇴 연령은 67세 3개. (3) 상황이나 특정 조건에 따라 교회(또는 목회자)가 필요로 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 (4) 즉 목사가 은퇴했지만 그는 다른 교회의 부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지역 교회의 담임목사는 아니다.	(1) 은퇴를 위한 교회적 조치가 있다. 따라서 교회는 연금기금을 함께 관리한다. (2) 대부분 은퇴한 목회자는 목사관을 떠나 자신의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해야 한다.	(1) 목사를 청빙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과거에는 최근 졸업한 목회자들을 위한 전통적인 회중이 있었다. (2)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상황은 변하고 있다. 그러한 목회자들은 결국 시골 마을이 아닌 도시의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총회는 NGK 목회자의 전환 과정을 방해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실무 그룹에 임무를 부여했다. 총회는 여전히 이 문제로 분주하다. (2) 그 측면 가운데 하나는 주택 문제이기도 하다. 회중은 목사가 살 수 있는 목사관을 소유해야 하는가? 아니면 목사가 스스로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하기를 원하는가? 이 문제를 현재 다루고 있다.

현대 화란개혁교회의 목회자 수급

교단 이름	목사 배출 방법	목사 수급 현황	목사 은퇴 연령	목사 은퇴 후 생활	목사 임용시 대도시-지방간 차이	목사후보생 모집위한 교단의 계획
<p>기독교개혁교회</p> <p>(CGK)</p> <p>영어: (CRC)</p>	<p>(1) 일반적인 방법은 아펠도른 신학대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하는 것.</p> <p>(2)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에는 가능한 한 최고의 전문성과 자질이 요구되므로 학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p> <p>(3) 드물게 예외가 있는데, 설교의 은사를 가진 남성의 경우에 해당한다.</p> <p>(4) 그들은 비록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특정 지역에서 설교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p>	<p>현재 사역자가 약간 부족하지만 놀랄 정도는 아니다.</p>	<p>(1) 67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p> <p>(2) 목회자들 사역을 더 원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은퇴 연령 이상으로 더 봉사할 수 있다.</p>	<p>(1) 은퇴한 목회자들은 모두가 67세가 되면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는다.</p> <p>(2) 그 외에 교회에서 약간의 추가 연금을 받게 된다.</p>	<p>(1) 목회자가 임용될 때 대도시와 소도시 등의 차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p> <p>(2) 다른 교회로 옮기기를 원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청빙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적용할 방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p>	<p>(1) 청소년들이 하루 동안 신학교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p> <p>(2) 목회자들은 남학생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설교에서 이를 언급하도록 권장된다.</p> <p>(3) 아펠도른신학교(TUA)는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에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p>

V. 미국 개혁/장로교회

1. 북미주개혁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 CRC)

1)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칼빈의 제네바의 교회법령을 따라서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와, 장로, 집사”를 교회의 직분으로 제시.

B. 목사 (말씀의 사역자)

(제6조)

a. 목사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신학 훈련을 마쳐야 한다.

b. 본 교단 소속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총회에서 말씀의 사역자 후보로 공포된 자는 목사로 청빙 받을 자격이 있다.

바로 이어서 제6조의 보칙(Supplement, Article 6)에서 칼빈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 이외에서 신학을 공부한 학생은 편목과정(Ecclesiastical Program for Ministerial Candidacy: EPMC)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칼빈신학교를 졸업해야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

2) 목사의 배출을 위한 신학교와 신학교 교수

**(제19조)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theological seminary)를 유지한다.
이 신학교는 총회가 지명한 이사회를 통해 총회의 관할을 받으며 총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20조) 신학교 교수로 지명된 말씀의 사역자의 직무는
신학생을 말씀의 사역자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단과 오류에 대항하여 건전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교회규정 제21조

“교회는 성도들을 권하여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지망하게 하며,
노회와 협력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

첫째 교회는 (신실하고 목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성도들을 권면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encourage)를 해야 한다.

둘째는 교회와 노회가 협력해서 목회자가 되고자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3) 목회자의 생활비

북미주개혁교회의 규정은 제15조에서 목회자의 생활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15조)

각 교회는 카운실을 통해 소속 목사에게 적당한 생활비(proper support)를 지불해야 한다.

예외로 노회의 허락 하에 목사가 교회와 동의하여 다른 직업을 갖고 이를 통해 일차적 또는 보조적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외는 목사를 부양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없는 교회로 제한된다.

15조 보칙(Supplement, Article 15)

“적당한 생활비”의 정의

교회 목회자에 대한 적당한 생활비에는

충분한 월급,

건강보험

주택,

본 교단의 연금 부담금,

연장교육을 위한 기금,

그리고 사역과 관련된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2004 총회회의록, 611쪽)

15조 보칙은 계속해서 교회는 목사에게 최저임금, 부가 혜택 및 주거비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의료보험도 가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4) 목회자의 은퇴(retirement)

제18조

“목사가 은퇴할 연령이 되었거나 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으로 목사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목사는 은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때 은퇴는 카운실과 노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은퇴한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며 교회가 부여한 공적 사역을 수행할 권위를 갖는다. 은퇴 목사의 감독교회는 총회 규정에 따라서 해당 목사와 그 부양가족이 품위 있게 생활할 비용을 지원할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제18조의 보칙

“본인이 희망할 경우, 66세에 은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목사가 노회의 승인을 얻으면 55세에 조기 은퇴할 수 있는데, 이때는 2011년의 총회 규정에 의해서 감액된 연금을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5) 교회와 직분자의 지위

북미주개혁교회의 규정은 제85조에서 규정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내용이 최초의 화란개혁교회의 총회인 엠던총회(1571)의 제1조와 동일하다는.

결론.

(제85조)

교회는 다른 교회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직분자는 다른 직분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북미주장로교회는 교회간에 위계질서가 있지 않으며, 따라서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것은 1571년 네덜란드 최초의 엠던 총회에서 네덜란드 본토의 “십자가의 교회”와 네덜란드 밖으로 떠났던 “피난민 교회”나, 그리고 프랑스어권 화란개혁교회나 화란어권 화란개혁교회 사이에 어떤 위계나 차등이 없다는 것을 밝혔던 역사적 개혁교회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

V. 미국 개혁/장로교회

2. 미국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8-5.

어떤 이가 강도장로로 사역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 다른 모든 장로들과 공유하는 기능에 추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설하고, 설교함으로 양무리를 먹이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그의 권한에 속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하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라 불린다.

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무지하여 멸망할 자들에게 전파하는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라 불린다.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설교자라 불린다.

그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나누어 주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시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 불린다.

2) 목사 후보생(Candidates for the Gospel Ministry)과 인턴십

교회정치 제18장

“모든 목사 후보생은 반드시 노회의 보살핌 아래 있어야만 하고, 통상 그 노회는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관할하는 노회여야만 한다.”

목사후보생이 소속된 교회의 당회는 목사후보생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추천서를 해당 노회에 보내야 한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 년 이상 인턴십의 봉사”를 해야 한다.

동시에 노회의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목사후보생들은 일 년에 한 번 보고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목회자 후보생의 인턴십은 최소한 일 년인데 후보생이 정식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이나 그 후에 있을 수 있다.

또한 노회는 “지도 교수로부터 목사 후보생의 품행과 근면함과 학업 성적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확보해야 한다.”

3) 목사의 은퇴

미국장로교회는 목사가 소속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할 때 노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목사의 은퇴에 대해서는 목사가 연령상의 이유나 의학적인 문제로 은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밝히고 있다.

목사가 연령상의 이유로 은퇴를 원하거나, 혹은 병약해져서 의학적인 신체 장애자가 되어 더 이상 교회의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노회는 [그에게] 명예 은퇴 목사 호칭을 줄 수 있다. 목사는 의학적인 신체 장애자이든 명예 은퇴를 했던 노회의 회원권은 계속되며, [노회의] 선출이나 임명에 의해 위원회나 전권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미국장로교회의 경우는 은퇴의 동기가 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사가 연령상의 상황과 건강의 이유로 은퇴를 표명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은퇴 연령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VI. 목회자 자질의 중요성: 소명감의 고취와 개혁신학과 교회를 향한 열정

한국교회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1998-2023』.

전반적으로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한국교회 목회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 | |
|----------------------------|------------------------|
| (1) 윤리적으로 모범적이다 (37.3%) | (2) 물질에 욕심이 없다 (23.7%) |
| (2) (3) 신앙생활에 솔선수범 (21.5%) | (4) 리더십이 있다 (17.5%) |

<한국교회 목회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

개신교인의 경우 (1) 물질적 욕심 (21.0%) (2) 언행불일치 (14.4%) (3) 인격, 윤리 등 부족 (14.0%) (4) 사회현실 이해 및 소통 부족 (11.6%)이며,

비개신교인의 경우는 물질적 욕심 3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인격, 윤리 등 부족(24.3%)

VII. 목회자 수급을 위한 정책 제안

1. 담임 목회자 수급

1) 목회자 연금제도

목회자들이 노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명에 충실하게 목회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과 도시의 중소교회, 농촌 지역 교회 등에서 목회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모든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화란의 개혁교회는 모두 목회자의 연금제도를 필수적으로 실시함.

본 교단의 경우, 철저한 분석에 근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연금제도를 실시 해야 할 것이다.

교단 전체 목회자 대상. (이미 실시하는 교회나 노회들이 생기고 있기에,

총회 차원에서 더욱 전문성 있는 기구를 통해, 신뢰성 있고 전문성 있는 연금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

2) 목사의 정년 문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아님.

개혁신학적으로 절대적인 사안 아님.

가시적인 제도적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사회적, 국가적 환경과 맞물려

신학적 고려와

교회의 공감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고 지켜 나가야 할 사안

현재 만 70세 (만 70세 마지막 날까지).

(1) 현행대로 실시할 경우

긍정적인 면

담임 목회자를 고대하고 있는 40-50대 목회자들은 평생을 부목사로 은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줄일 수 있다.

고연령 목회자와 중장년 목회자 간에 의견의 대립이 적을 것이다.

목회자 정년과 관련하여 교단 내 혼란이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면

농촌지역 교회나 도시의 중소교회가 겪고 있는 목회자 수급 적신호에 대응할 수 없다.

(2) 목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목사 정년은 현행대로 만 71세(생일 전까지)로 한다. 단, “세례교인 50명 미만의 교회”에서 “교회나 목사가 청원하고 노회에서 심사하여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서 만 73세(혹은 75세로 고려할 수도 있음)까지 정년을 연장하고 총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긍정적인 측면

목회자 부족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잠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목회자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자립이 어려운 교회나 농촌 지역 교회의 경우 폐 당회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은 이번에 실시한 전국 노회의 설문조사에서 일부 제시되었던 문제의식이었다.

고려되어야 할 측면

목회자 정년 연장은 향후 지역 교회의 목회자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단지 몇 년 늦출 뿐이지 본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고령의 목회자가 효과적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아직 담임목회자가 되지 못한 장년층 목회자들의 미래가 염려된다.

세례교인 50명이라는 조건을 강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목사나 교회나 노회에서 이 규정대로 정직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총회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컨트롤 타워가 요청된다.

세례교인 50명이라는 숫자가 목사 정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의 조건으로서 얼마나 정당한지 교단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3) 교회의 합병

전국 노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교회들의 경우,
그리고 수도권외의 경우도 소형교회나 미자립교회의 경우
교회가 재정적이고 인적인 문제에 봉착하거나
담임 목회자의 은퇴 이후 후임을 청빙 할 상황이 되지 못할 경우,
두 교회가 연합 즉 합병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 경우 교회 재산이나 예배 처소, 혹은 양 교회의 성도들의 연합에 대한
총회 차원의 <매뉴얼>이 있어서 잘 안내해야 할 것이다.

2. 부교역자 수급: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에 특정한 사역 경험을 추가하는 경우

(전국 노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담임 목사 수급도 문제이며, 특히 부교역자의 수급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안) 목사 안수 자격 요건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 목회 경력 2년 추가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 중에 신대원과 강도사 기간 중 2년 이상 교회 사역을 한 자에게 안수를 주도록 한다. 단 교회 사역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한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

이 경우는 수도권 이외의 교회가 겪고 있는 부교역자 수급의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측면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의 중소교회 역시 부교역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선교에 목회 비전과 철학이 있는 목사후보생이나 강도사의 경우에 목사 안수 자격 요건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부교역자를 청빙할 수 없는 교회의 경우에 대한 대안이 요청된다.

(B안) 목사 안수 자격 요건에 “세례교인 100명 이하의 교회 사역에 제한”하는 목회 경력 2년 추가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 중에 신대원과 강도사 기간 중 2년 이상 교회 사역을 한 자에게 안수를 주도록 하 되, 단 교회 사역은 “세례교인 100명 이하의 교회 사역에 제한”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에 교회 사역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중대형 교회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부교역자를 청빙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측면

세례교인 100명이라는 숫자를 목사 안수 조건에 명시할 때 이 숫자가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교단적 합의가 요청된다.

이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교인 수가 많은 수도권의 교회가 아닌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여전히 부교역자 수급의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A안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세례교인 100명 미만의 교회의 경우 역시 부교역자를 초빙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에 대한 총회나 노회 차원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C안) 목사 안수 자격 요건에 “수도권 이외 지역 목회 경력 2년” 혹은 “세례교인 100명 이하의 교회 사역에 제한하는 목회 경력 2년” 추가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에 위의 A안과 B안을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긍정적인 측면

이 안은 목사 안수 자격에 교회 사역이라는 조건을 달면서도, 위에 A안과 B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즉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회의 부교역자 수급이나 혹은 수도권을 포함하여 부교역자를 초빙하기 어려운 100명 이하 교회의 부교역자를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측면

그러나 이 경우는 앞의 A안과 B안의 경우의 문제와 같이, 수도권 이외에 있거나 세례교인 100명 미만의 교회가 부교역자를 초빙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교회의 부교역자 즉 강도사나 전도사의 생활비를 개 교회가 맡는 것이 아니라 노회 혹은 총회에서 일부 분담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목회자 연장 교육: 총신의 양지 Th.M.과정의 활성화와 지역별 주요 교회의 목회 멘토링 시스템 구축

이번 연구에서 각 노회별 설문조사에서 파악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각 지역 목회자들의 연장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 목회자들의 경우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 더 이상의 신학적 재공급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설교와 목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다른 교단들에서도 동일한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기도 하다.

부목사는 총신대의 Th.M. Th.D. 혹은 Ph.D. 과정 공부를 통해서 신학적 재충전을 할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특히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신설된 양지 Th.M. 과정은 부교역자의 연장 교육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과정이다.

이때 각 지역별 주요 교회에서 목사 연장교육을 받는 부교역자들을 멘토링하는 과정을 양지 Th.M에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4.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교육: 총신신대원과 목회자 수급

M.Div.					
전기			후기		
년도	졸업회기	졸업생수(명)	년도	졸업회기	졸업생수(명)
2024.2.	117	305	2024.8.	117	미정
2023.2.	116	320	2023.8.	116	35
2022.2.	115	367	2022.8.	115	23
2021.2.	114	364	2021.8.	114	26
2020.2.	113	362	2020.8.	113	13
2019.2.	112	557	2019.8.	112	19
2018.2.	111	203	2018.8.	111	8
2017.2.	110	376	2017.8.	110	19
2016.2.	109	361	2016.8.	109	19
2015.2.	108	382	2015.8.	108	6

지난 10년간 총신신대원 졸업생 수

S.T.M.					
전기			후기		
년도	졸업회기	졸업생수(명)	년도	졸업회기	졸업생수(명)
2024.2.	2	23	2024.8.	2	미정
2023.2.	1	19	2023.8.	1	0

수업년도	수강생(명)
2024.1.	49
2023.1.	67
2022.1.	101
2021.1.	95
2020.1.	90
2019.1.	115
2018.1.	총회에서 교육함
2017.1.	112
2016.1.	121
2015.1.	175

지난 10년간 칼,대,광 졸업자
총신 단기 교육 수

학년도	입학(명)	졸업(명)
2024	67	
2023	50	38
2022	58	65
2021	42	61
2020	84	40
2019	59	45
2018	42	74
2017	52	30
2016	55	44
2015	56	44
2014	41	31

여원우 :

지난 10년간 총신 신대원 입학및 졸업

5. 지역 교회의 교회교육 담당자를 위한 “지역 거점 교회교육지도사 신학교육 시스템” 설계

실제적으로 교회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평신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단이 인정하는 “지역 거점 교회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각 지역 교회의 교회교육 사역에 투입될 수 있는 신실한 평신도 인력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교육의 과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발견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들은 향후 신대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목사후보생을 발굴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신학교 지원자 감소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교육 시스템은 이미 미국에서는 각 신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는 제도이며, 결국 신학교 입학 지원생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회교육 현장 사역자를 양성하는 목적도 이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CRC의 경우 제6조에서 목사 즉 말씀의 사역자의 요건을 “합당한 신학 훈련을 마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제7조에서는 “정규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경건, 겸손, 영적 분별,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타고난 은사에 탁월한 증거가 있는 자”는 예외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허락될 수 있다”는 규정이 등장한다.

즉 평신도로서 교회 사역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 시스템의 경우 그 목적이 목사 배출이 아니지만, 각 지역별 교회교육 현장의 준비되고 헌신된 사역자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교육의 커리큘럼은 교단의 목회자 배출 기관인 “총신대신대원”에서 기획하고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 권역별로, 즉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나누어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지역 교회교육 현장 사역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총신신대원 뿐만 아니라, 칼빈, 대신, 광신 등 교단 내 신학교가 연합해서 강의 요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전임 교수로 사역하고 있지 않은 본 교단 소속의 젊은 신학 박사들이 교단의 신학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

물론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각 지역의 총회인가 신학교들이 실제로 교단의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신학교도 동시에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 재정

개개 교회 뿐 아니라 지역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노회 별 공공의 기금을 확보하여 사용하기로 하 되, 지역교회의 경우 재정이 열악할 것이므로 총회 차원에서 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각 권역 혹은 지역의 대형교회들이 그 지역 교회 현장을 위해 일정 부분 재정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방법 도 있을 것이다.

(5) 고려할 점

위와 같은 교회교육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먼저 그 신학교육의 기초가 본 교단에서 지향하는 철저한 개혁신학 위에 서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이와 같은 지역 교회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자칫 잘못하여 노 회나 교단 정치의 무대가 되어서는 그 선한 목적이 상실될 것으로 사료 된다.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단의 연합성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단의 지역주의에 편승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총신대 신대원의 중심추 역할이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6) 정기적인 지역별 순회 세미나 개최

VII. 목회자 수급을 위한 정책 제안

6. 여성 사역자의 활동

신대원에 여학생의 입학과 졸업은 유지되거나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인다.

그러나 졸업한 이후 여성 사역자들이 목사 안수 문제로 교단을 떠나는 예가 많았다.

물론 여성 목사안수는 신학적인 문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과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 사역자들이 역할이 고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 사역자의 지위에 대한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연구와

실제 목회 현장에서 여성 사역자를 어떻게 공급하여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인지

목회 인력의 수급에 대한 논의 또한 별도의 맥락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VII. 목회자 수급을 위한 정책 제안

7. 미래를 위한 고려 사항: 해외 선교 자원 개발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목회자 개발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세계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미래가 기대되는 대륙이다. 아시아의 기독교는 서양에서 전래되었는데, 세계에서 여전히 왕성하게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도 아시아다. 향후 세계의 문명과 기독교의 미래가 아시아에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본 교단이 세계 선교, 특히 미래의 대륙인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동역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시대를 대비 목회자원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사명이 더욱 요청된다.